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[별지 제31호의2서식] <개정 2017. 3. 17.>

분 할 익 금 산 입 조 정 명 세 서

(앞 쪽)

1. 제출법인의 인적사항

① 법인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
③ 대표자 성명		④ 법인등록번호	
⑤ 사업장(본점)소재지	(전화번호:)		
⑥ 업 종		⑦ 사업개시일자	
⑧ 사업연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
⑨ 이월결손금		⑩ 기타 채무면제·자산수증익	

2. 신청내용

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

익금불산입		분할익금산입(계획)					
		1차 연도		2차 연도		3차 연도	
⑪ 사업연도	⑫ 금액	⑬ 연도	⑭ 금액	⑮ 연도	⑯ 금액	⑰ 연도	⑱ 금액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([ ] 제36조제19항, [ ] 제116조의31제20항)에 따라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작 성 방 법

1. ⑨ 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.

2. ⑩ 기타 채무면제·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「법인세법」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.